위험하지 않은 마약 데이터 흡입 수기 :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모형 추계 사례





안상선 (CEO, ㈜ M-Robo) www.data-ahn.tech

여러분께서 기대한 강의 토픽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직원 구속…논란 이후 첫 구속

등록 :2019-02-18 08:48

ē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가 지난달 28일 보도한 버닝썬 직원들의 폭행 강면을 달속 뉴스데스크 감무리

신병확보한 경찰, 마약 유통경로 규명에 집중…중국인 여성 추가 소환 방침







(정말 재미없지만 위험한) 비용 / 편의 분석

[칼럼] 국책연구원들의 엉터리 경제성 보고서 - 녹색당이

www.kgreens.org/opinion/칼럼-국책연구원들의-엉터리-경제성-보고서/▼

2015. 10. 10. - 비용편역분석 숫자 1에 끼워 맞추기에 급급한 경제성 보고서를 사업 추진의 근거 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엉터리 경제성 보고서에 기반을 둔 수도권...

환경정책의 비용/편익분석 지침서 - 환경부●

ecolibrary.me.go.kr/nier/viewer/MediaViewer.ax?cid=68706&rid=28

본 보고서를 환경정책의 비용/편약 지침서 개발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년 3월, 동국대학교, 책임 연구자 : 김 일 중, 공동 연구자 : 홍 종 호, 누락된 검색어: 엉터라

정부 새만금 사업 경제성 분석 '엉터리'비용 줄이고 이익 부풀려 - ...

www.ibuan.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 •

2005. 9. 11. - 정부 새만금 사업 경제성 분석 '엉터리'바용 풀이고 이익 부풀려민관 ... 전문가들 사 이에서 편익과다계상, 이중계산 등의 오류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용효과 분석 방향 연구 - 한국과학기술기회...

https://www.kistep.re.kr/getFileDown.jsp?fileIdx=7338&contentIdx...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관련 연구는 다수 수행된 바 있으나....[비용효과분석의 선택조건]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의 ...

누락된 검색어: 어디리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 9 - Google 로서 검색결과

https://books.google.co.kr/books?isbn=8932964351

나오미 클라인 - 2016 - Political Science

... 이용해야 할 위해 보호하기 의 자유를 약자 인 가난한 나라 국민들을 그들의 터전에서 내쫓는 것이 훨씬 쉽다 는 엉터리 비용 편약 분석을 토대로 한 판단일 뿐이다.

"문화예술회관 타당성조사 엉터리" - 김제시민의신문♥

www.g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50 *

2019. 6. 24. - 문화예술회관 타당성조사 엉터리"비용은 풀이고, 편익은 부풀렸다 오인근의원, 시 정질문 통해 지적. 홍성근: 승인 2002.09.06 00:00; 댓글 0.



4대강 보 철거 여부, 내년 2월 결정된다

프레시안 - 2018. 12. 22.

23일 환경부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차 회의 결과, 4대강 16개 보 처리 기준을 비용편의 분석을 통해 결정하고, 당초 연내 공개 ...

4대강 기획위, 4대강 복원 보 처리 위한 평가지표 확정 노컷뉴스 (보도자료) - 2018. 12. 22.

모두 보기



전문가도 두 동강... "홍수-가뭄 대비" "시궁창 냄새 어쩌나"

중앙일보 - 2019. 3. 20, 영터리 경제성 평가로 하 엉터리 경제성 평가로 해체 판단"... 즉 편익/비용 비율에 따라 어떤 보는 남겨두고, 어 떤 보는 해체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정부 ...



주부가 통계학자보다 잘할 수도 있는 일

단비뉴스 - 2019. 8. 13.

일반적으로 통계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통계작성기관의 사업비에 ... 즉 편익/비용이 나 생산/비용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효율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세종보 해체 결정, 어디부터 잘못됐나

세종의소리 - 2019. 4. 2.

세종보 건설목적을 잘못 짚다보니 경제성분석 과정도 엉터리가 됐다..... 기획위는 경 제성 분석을 통해 보 철거 시 '편의 비용'으로 스수생태 755억원.



"정부·세종시, '세종보 철거 시도' 즉각 중단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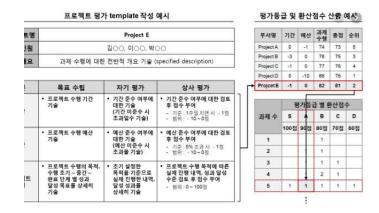
세종의소리 - 2019. 3. 28.

특히 "환경부 공무원들은 직분을 망각한 채, 엉터리 설문조사와 자의적 ... 도시형 보에 맞는 비용편역(B/C) 분석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

- 1) 여러 대안(Alternatives)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때
- 2) 하나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평가할 때

유용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경제성 분석 방법





비용/편의 분석 (Cost-Benefit analysis)

Key : "<mark>화폐가치</mark>"로 계산

: 쉽게 말해 가.성.비 좋은 것을 고르거나, 아예 사지 않거나



2. Cost-Benefit Analysis

시의성, 필요성이 높지만,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정책 이슈에 주로 사용

- (예) 1. 신규 공항 건설 및 확장
 - 2. 고속철도 노선 선정
 - 3. 건강보험 적용 약품 선정
 - 4. 범죄 및 형사정책 관련 (행정비용)
 - 5. 의료 및 과학기술 등 기타..

2. Cost-Benefit Model

Cost Function, Benefit Function, Discount rate

(CASE) 데써(데이터 싸이언스) 게임 개발 여부

아주 아주 재밌는 데싸 게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업년도 1년차에 개발비 80,000달러가 소요됩니다. 1), 2) 중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 1) 단순한 앱게임으로 만들 경우 초기 사업 년도 부터 바로 수익이 납니다. 1년 20,000달러, 2년 30,000달러, 3년 50,000달러, 4년 30,000달러, 5년, 20,000달러
- 2) VR 기기를 사용하는 게임을 만들 경우 4년차 부터 수익이 납니다. 4년 50.000달러, 5년 120,000달러

신난다 히히



2. Cost-Benefit Model

Cost Function, Benefit Function, Discount rate

(예1)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 | 사업 A | 사업 B | | |
|---------------|--------------|------------------|-------------------|--|--|
| 비용(C, | 올해 발생) | 80,000 | 80,000 | | |
| | 1년 후 | 20.000 | 0 | | |
| 편익 (B) | 2년 후 3년 후 | 30.000 50.000 | 0 | | |
| | 4년 후 5년 후 | 30,000 20,000 | 50,000 120,000 | | |
| | 00 + | 20,000 | 120,000 | | |

(예1) 할인율을 고려한 경우

| ŤLOI O | 순현재가치 | (NV=B-C) |
|--------|--------|----------|
| 할인율 | 사업 A | 사업 B |
| 0.00 | 70.000 | 90.000 |
| 0.01 | 65.599 | 82.225 |
| 0.05 | 49.802 | 55.158 |
| 0.10 | 33.450 | 28,661 |
| 0.15 | 20.048 | 8.249 |
| 0.20 | 8.940 | -7.662 |

3. Case: Drug & Crime

목적 : "마약"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알고 싶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찾는다.

대한민국 마약 리포트

마약 청정국가라면서... 커피숍 • 거리에서도 약물 거래

입력 2018.01.17.04:40 | 📠 TOP 5면 0단

[마약리포트, 한국이 위험하다] <2>상상초월: 청정하지 않은 대한민국

#1

2016년 마약사범만 따져도 인구 10만명당 30명 달해 공식통계에 안 잡힌 암수범죄 검찰선 "20~30배 이른다"

#2

SNS 통한 비대면 거래 늘어 명문대 재학생 • 공무원 • 주부 등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

'마약에 가장 찌든 나라는?' 세계마약지도 공개 - WIKITREE®

https://www.wikitree.co.kr/241663 *

2015. 12. 2. -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마약을 많이 하는 나라'라는 악명을 얻었다. 한국은 비교 적 청정지역으로 밝혀졌다.

[단독] 정부 무관심 속에 무너진 '마약 청정국' - 시사저널이

https://www.sisai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212 •

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이면 '마약 청정국가'로 인정한 마약류 사범이 약 30명이다.

가로 분류되는 한국 (국내 마약) > 사회 | 대...

bbs/board.php?bo_table=B51&wr_id... •

000여명 수준으로 외국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다. 이는 다른 국가에 + 적다는 뜻이기도 ...

커피숍·거리에서도 약물 거래 | 다음 뉴스 - ...

0180117044557429?f=m

사범만 따져도. 인구 10만명당 30명 달해. 공식통계에 안 잡힌 암수 #2. SNS 통한 비대면 거래 눌어.

'버닝썬' 이문호 대표 모발에서··"마약류 검출" 말...국내 마약사범 1만명 넘어"- 헤럴드경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한국인권신문♥

www.committee.co.kr/sub_read.html?uid=40135 *

서 정부 관계부처가 마약류 국내 유입과 유통 차단을 위한 단속 ...

2019. 4. 9. - 유엔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가'로 분류한다. 대검 찰청이 발표한 '2017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국내에서 검거 ...

2016. 4. 26. - 최근 3년 입구 마약도 증가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내 마약사범이 계속 늘면



4. DATA





| [그림 1-1] 양귀비 | 005 |
|-------------------------------------|-----|
| [그림 1-2] 아편 | 006 |
| [그림 1-3] 모르핀 | 007 |
| [그림 1-4] 헤로인 | 800 |
| [그림 1-5] 코카나무 | 009 |
| [그림 1-6] 코카인 | 009 |
| [그림 1-7] 크랙 | 010 |
| [그림 1-8] 페티딘 | 011 |
| [그림 1-9] 메타돈 | 012 |
| [그림 1-10] 메트암페타민 | 015 |
| [그림 1-11] 마황 | 016 |
| [그림 1-12] MDMA | 017 |
| [그림 1-13] LSD 스티커 | 018 |
| [그림 1-14] 정제형 LSD | 018 |
| [그림 1-15] 날부핀 | 019 |
| [그림 1-16] 덱스트로메토르판 | 020 |
| [그림 1-17] 펜플루라민 | 020 |
| [그림 1-18] JWH-018, HU-210, CP-47497 | 021 |
| [그림 1-19] AM-2201 | 022 |
| [그림 1-20] 케타민 | 023 |
| [그림 1-21] BK-MDEA | 024 |
| [그림 1-22] 아바 | 025 |
| [그림 1-23] GHB | 025 |
| [그림 1-24] 프로포폴 | 026 |
| [그림 1-25] 대마 | 027 |
| [그림 1-26] 대마초와 흡입기구 | 028 |
| [그림 1-27] 해시시 | 029 |
| [그림 1-28] 해시시 오일 | 030 |
| [그림 1-29] 2015년 마약류 관련 사망자 수 및 사망률 | 033 |
| [그림 1~30] 미국과 영국(및 웨일스)의 마약류 관련 | |
| 사망 통계 | 033 |
| [그림 1-31] 2014년~2017년 다크넷을 통한 마약류 | |
| 구입 비율 | 035 |
| [그림 1-32] 최근 10년간 국내 마약류사범 추이 | 040 |
| | |

2절 2016년도 마약류사범 검거내역

마약류별 내역

[표 3-1] 마약류별 단속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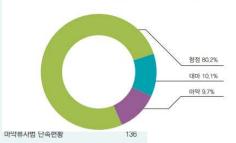
| 구분 | | area en | 인원 | !(명) |
|----|--------|--------------|-------|--------|
| | 건수 | 합계(명) | 구속 | 불구속 |
| 합계 | 12,053 | 14,214(100) | 2,894 | 11,320 |
| 마약 | 1,306 | 1,383(9,7) | 49 | 1,334 |
| 향정 | 9,674 | 11,396(80,2) | 2,668 | 8,728 |
| 대마 | 1,073 | 1,435(10.1) | 177 | 1,258 |

※ ()는 구성비 %

2016년 전체 마약류사범은 14,214명으로 전년대비 19,3%(전년도 11,916명) 증가함

- 마약사범은 1,383명으로 전년대비 19.9%(전년도 1,153명) 증가함
- 향정사범은 11,396명으로 전년대비 18.4%(전년도 9,624명) 증가함
- 대마사범은 1,435명으로 전년대비 26.0%(전년도 1,139명) 증가함

[그림 3-1] 전체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단속 구성비



4. DATA: PDF



목적: "마약"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추계



질문 : Trigger 되는 변수를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

해당 년도에 발생한 마약 사범 숫자



해당 년도에 검거된 마약 사범숫자





해당 년도에 미겁거된 마약 사범숫자

교도시설로 간 마약 사범숫자

보호시설로 간 마약 사범숫자

질문: Trigger 되는 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해당 년도에 발생한 마약 사범 숫자



해당 년도에 걸거된 마약 사범숫자

검거율



해당 년도에 미겁거된 마약 사범숫자

교도시설로 간 마약 사범숫자

보호시설로 간 마약 사범숫자

수감률

입원률

질문 : Trigger 되는 변수로 몇 가지 모델을 만들어야 하나?

#1 범죄자 검거에 따른 행정 비용

#2 범죄자 치료에 따르는 비용

#3 범죄자에 대한 기회 비용(노동손실 비용)

| 년도 | 합계 | 마약 | 향정 | 대마 |
|-------|--------|-------|--------|-------|
| 2006년 | 7,709 | 868 | 6,006 | 835 |
| 2007년 | 10,649 | 958 | 8,521 | 1,170 |
| 2008년 | 9,898 | 1,396 | 7,457 | 1,045 |
| 2009년 | 11,875 | 2,198 | 7,965 | 1,712 |
| 2010년 | 9,732 | 1,124 | 6,771 | 1,837 |
| 2011년 | 9,174 | 759 | 7,226 | 1,189 |
| 2012년 | 9,255 | 582 | 7,631 | 1,042 |
| 2013년 | 9,764 | 685 | 7,902 | 1,177 |
| 2014년 | 9,984 | 669 | 7,919 | 1,154 |
| 2015년 | 11,916 | 1,153 | 9,624 | 1,139 |
| 2016년 | 14,214 | 1,383 | 11,396 | 1,435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원, |
|---|---|---|---|--|---|--|---|--|---|---|--|--|--|--|---|--|---|--|--|---|
| | | | | | 연간기준 | | | | | | | | | 마약 사용자 직 | | | | | 마약 사용 | 자 직접 추계 |
| | - DIFLA OF | OUDING ME | | 직접 | 의료비(보정 | 전) | - OIFL TIME | 직접의료비(보정 | 후) | - OFFC + OFF | OUTLOID HEO | | +0151 A 0 | 직접의료비(보정 | 전) | - 015 Y # 51 | 직접의료비(보정 | 平) | 보정 전 기준 | 보정 후 기준 |
| | 1인당소요된 외래진료비 | 외래의료 받 은 인원 | 비용계 | | 역입의료 원 은 인원 | 비용계 | 1인당 시물된 직접의료비 | 직접의료 받은 인원 | 비용 계 | 1인당소요된 외래진료비 | 외래의료 받은 인원 | 비용계 | 1인당 소요 된 직접의료 | 직접의료 받은 인원 | 비용계 | 직접의료비 | 직접의료 받은 인원 | 비용 계 | 2.5 (5) | 5 7/ 1/5 |
| 006년 | 155,000 | 451 | - | 1,406,000 | | 753,616,000 | 3,123,000 | 536 | - | 155,000 | | ********** | - | 77,090 | 108,388,540,000 | 3,123,000 | 77,090 | 240,752,070,000 | 120,337,490,000 | 252,701,020,00 |
| 007년 | 191,000 | | 105,623,000 | 1,319,000 | 1000 | 729,407,000 | 3,802,000 | 569 | 2,163,338,000 | 191,000 | | ********** | | 106,490 | 140,460,310,000 | 3,802,000 | 106,490 | 404,874,980,000 | 160,799,900,000 | 425,214,570,00 |
| 008년 | 172,000 | | 89,956,000 | 1,388,000 | | 684,284,000 | 4,274,000 | 493 | 2,107,082,000 | 172,000 | | ********* | | 98,980 | 137,384,240,000 | 4,274,000 | 98,980 | 423,040,520,000 | 154,408,800,000 | 440,065,080,00 |
| 009년 | 176,529 | | 66,864,117 | 1,392,580 | | 549,931,313 | 4,025,490 | 395 | 1,589,670,254 | 176,529 | | ********* | | 118,750 | 165,368,875,000 | 4,025,490 | 118,750 | 478,026,937,500 | 186,331,693,750 | 498,989,756,25 |
| 010년 | 179,177 | 375 | | 1,413,470 | | 552,328,311 | 4,085,870 | 391 | 1,596,596,798 | 179,177 | | ********** | | 97,320 | 137,558,900,400 | 4,085,870 | 97,320 | 397,636,868,400 | 154,996,406,040 | 415,074,374,04 |
|)11년 | 181,864 | 108 | | 1,434,670 | | 161,872,200 | | 113 | 467,919,390 | 181,864 | | *********** | | 91,740 | 131,616,625,800 | 4,147,160 | 91,740 | 380,460,458,400 | 148,300,829,160 | 397,144,661,76 |
| 012년 | 184,592 187,361 | 31 87 | 5,681,422 16,276,827 | 1,456,190 | | 46,727,602 133,870,552 | 4,209,370 4,272,510 | 32 91 | 135,074,245 386,976,769 | 184,592 187,361 | 92,550 | ********** | | 92,550 97,640 | 134,770,384,500 | 4,209,370 4,272,510 | 92,550 97,640 | 389,577,193,500 417,167,876,400 | 151,854,374,100 162,608,777,240 | 406,661,183,10 |
| 013년 014년 | 190,172 | 97 | | 1,478,030 | | 152,183,998 | 4,272,510 | 101 | 439,915,429 | 190,172 | 97,840 | | | 99,840 | 149,779,968,000 | 4,272,510 | 99,840 | 432,966,144,000 | 162,606,777,240 | 451,952,916,48 |
| | 193,024 | 255 | | 1,500,200 | | 404,294,956 | 4,401,640 | 266 | 1,168,680,083 | 193,024 | 119,160 | ********** | 1,522,710 | 119,160 | 181,446,123,600 | 4,401,640 | 119,160 | 524,499,422,400 | 204.446.863.440 | 547,500,162,24 |
| | | 233 | | | | 477.552.528 | 4.467.670 | 309 | 1,380,445,215 | 195,920 | | ********** | 1,545,550 | 142.140 | 219.684.477.000 | 4,467,670 | 142.140 | 635.034.613.800 | 247.532.545.800 | 662.882.682.60 |
| 17년 2009~20 | 195,920 017년 1인당 소 | 요된 직접진 | | | 소요된 외래 | 진료비에 의료 | 수가 인상률(1 | .5%)를 반영해 | 10001 | 1000000000 | | | 1,343,330 | 142,140 | 219,004,477,000 | | | 033,034,013,000 | and the section of the section of | outonionion. |
| 017년 2009~20 외래 및 | 195,920 017년 1인당 4 직접 의료를 | 요된 직접진 받은 인원은 | 로비는 2006년 2006~2008년 | 1~2008년 1인동 | 소요된 외래 비 외래, 직접 계 (舊 보고/ | 진료비에 의로 의료 받은 인 d 87p <표2- | 2수가 인상률(1 원 비중을 기준 | .5%)를 반영해 치로해서 매년 | 산출했음 | 1000000000 | | | 1,343,330 | | | | | 633,637,013,000 | | (단위, 원, |
| 017년 2009~20 * 외래 및 | 195,920 017년 1인당 4 직접 의료를 | 요된 직접진 받은 인원은 | 로비는 2006년 2006~2008년 | ~2008년 1인당 마약중독자 대 비 손실 비용 추 | 소요된 외래 비 외래, 직접 계 (舊 보고/ 연간기준 | 진료비에 의로 의료 받은 인 네 87p <표2- | 로수가 인상률(1 원 비중을 기준 31-1>~ 89p< | .5%)를 반영해 치로해서 매년 표2-31-3>) | 산출했음. 마약중독자에 (| 1000000000 | | | 1,343,330 | 마약 사용자 직 | 접 추계 | | | | 마약 사용자 직접 | (단위, 원, |
| 017년 2009~20 * 외래 및 | 195,920 017년 1인당 4 1 직접 의료를 > 마약(Opioid | 요된 직접진 받은 인원은) 오남용에 대 | 로비는 2006년 2006~2008년 | -2008년 1인당 마약중독자 대 비 손실 비용 추 | 소요된 외래 비 외래, 직접 계 (舊 보고/ 연간기준 | 진료비에 의료 의료 받은 인 너 87p <표2- | 로수가 인상률(1 원 비중을 기준 31-1>~ 89p< | .5%)를 반영해 치료해서 매년 표2-31-3>) | 산출했음. 마약중독자에 (| 기준치를 곱 | 해서 산출했음 | | | 마약 사용자 직 직접의료비(보정 | 접 추계 | | 직접의료비(보정 | 辛) | 마약 사용자 직접 | (단위, 원, 주계 |
| 017년 2009-20 * 외래 및 표1-1-2> | 195,920 017년 1인당 4 1 직접 의료를 > 마약(Opioid | 요된 직접진 받은 인원은 | 로비는 2006년 2006~2008년 | ~2008년 1인당 마약중독자 대 비 손실 비용 추 직접 1인당 소요된 | 소요된 외래 비 외래, 직접 계 (舊 보고/ 연간기준 | 진료비에 의료 의료 받은 인 너 87p <표2- | 로수가 인상률(1 원 비중을 기준 31-1>~ 89p< | .5%)를 반영해 치로해서 매년 표2-31-3>) | 산출했음. 마약중독자에 (| 기준치를 곱 | | 비용계 | 1인당 소요 된 작첩의료 | 마약 사용자 직 | 접 추계 | 1인당 지출된 작접의료비 | | 辛) | 마약 사용자 직접 보정 전 기준 | (단위, 원, 주계 보정 후 기준 |
| 017년 2009-20 * 외래 및 표1-1-2 > | 195,920 017년 1인당 4 직접 의료를 > 마약(Opioid 1인당소요된 외래진료비 262,000 | 요된 직접진 받은 인원은)) 오남용에 대 외래의료 받 은 인원 93 | 로비는 2006년 2006~2008년 한 작정의로비 비용계 24,366,000 | ~2008년 1인당 마약중독자 대 비 손실 비용 추 직접 1인당 소요된 직접의료비 1,216,000 | * 소요된 외래 비 외래, 직접 '계 (품 보고/ 연간기준 합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 은 인원 77 | 진료비에 의료 의료 받은 인 네 87p <표2- 전) 비용계 93,632,000 | 2수가 인상률(원 비중을 기준 31-1>- 89p< 1인당 지출된 직접의료비 3,262,000 | .5%)를 반영해 치료해서 매년 표2-31-3>) 작업의료비(보정 작업의료 받은 인원 77 | 산출했음. 마약동독자에 (후) 비용 계 251,174,000 | 1인당소요된 외래진료비 262,000 | 해서 산출했음 외래의로 받은 인원 77,090 | 비용계 5,190,778,060 | 1인당 소요 된 작접의료 1,216,000 | 마약 사용자 직 직접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090 | 접 추계 전) 비용계 13,498,767,360 | 1인당 지출된 작접의료비 3,262,000 | 직접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090 | 学) 비용 계 36,211,331,520 | 마약 사용자 직접 보정 전 기준 18,689,545,420 | (단위, 원, 주계 보정 후 기준 41,402,109,58 |
| 017년 2009~20 * 외래 및 표1-1-2> 006년 007년 | 195,920 2017년 1인당 4 직접 의료를 > 마약(Opioid 1인당소요된 외래진료비 262,000 331,000 | 요된 직접진 받은 인원은 () 오남용에 C 외래의료 받 은 인원 93 119 | 료비는 2006년 2006~2008년 화 작접의료비 비용계 24,366,000 39,389,000 | -2008년 1인당 마약중독자 대 기 손실 비용 주 1인당 소요된 직접의료비 1,216,000 957,000 | 상 소요된 외래 비 외래, 직접 에 (舊 보고/ 연간기준 합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반 은 인원 77 79 | 진료비에 의료 의료 받은 인 네 87p <표2- 전) 비용계 93,632,000 75,603,000 | 2수가 인상률(1 원 비중을 기준 31-1>~ 89p< 1인당 자출된 직접의료비 3,262,000 3,679,000 | .5%)를 반영해 치호해서 매년 표2-31-3>) 작집의료비(보정 작집의료 받은 인원 77 | 산출했음. 마약용독자에 (후) 비용 계 251,174,000 290,641,000 | 1인당소요된 외래진료비 262,000 331,000 | 해서 산출했음 외래의료 받은 인원 77,090 | 비용계 5,190,778,060 | 1인당 소요 된 작첩의료 1,216,000 957,000 | 마약 사용자 직 직접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090 106,490 | 전 추계 전) 비용계 13,498,767,360 14,573,262,990 | 1인당 지출된 직접의료비 3,262,000 3,679,000 | 직접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090 106,490 | 후) 비용 계 36,211,331,520 56,024,069,530 | 마약 사용자 직접 보정 전 기준 18,689,545,420 25,077,223,610 | (단위, 원, 주계 보정 후 기준 41.402,109,58 66,528,030,15 |
| 017년 2009~20 * 외래 및 # 표1-1-2 > 006년 007년 008년 | 195,920 017년 1인당 4 직접 의료를 > 마약(Opioid 1인당소요된 외래진료비 262,000 331,000 217,000 | 요된 직접진 받은 인원은 I) 오남용에 대 외래의료 받 은 인원 119 122 | 료비는 2006년 2006~2008년 한 작업의로 비용계 24,366,000 39,389,000 26,474,000 | ~2008년 1인당 마약중독자 대 비 손실 비용 주 작업당 소요된 직접의료비 1,216,000 957,000 1,140,000 | 상 소요된 외래 비 외래, 작접 비 외래, 작접 연간기준 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 은 인원 77 79 | 진료비에 의료 의료 받은 인 네 87p <표2- 전) 비용계 93,632,000 75,603,000 120,840,000 | 2수가 인상률(1 원 비중을 기준 31-1>~ 89p< 1인당 지출된 작업의료비 3,262,000 4,059,000 | 5%)를 반영해 처로해서 매년 표2-31-3>) 작업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 79 | 산출했음 마약중독자에 (후) 비용 계 251,174,000 290,641,000 430,254,000 | 1인당소요된 외래진료비 262,000 331,000 217,000 | 해서 산출됐음 외래의로 받은 인원 77,090 77,090 98,980 | 비용계 5,190,778,060 ######### 5,562,972,940 | 1인당 소요 된 직접의료 1,216,000 957,000 1,140,000 | 마약 사용자 직 직접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090 106,490 98,980 | 전 추계 전) 비용계 13,498,767,360 22,905,951,600 | 1인당 지출된 직접의료비 3,262,000 3,679,000 4,059,000 | 직접의료비(보장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090 106,490 98,980 | 후) 비용계 36,211,331,520 56,024,069,530 81,557,243,460 | 마약 사용자 직접 보정 전 기준 18,689,545,420 25,077,223,610 28,468,924,540 | (단위, 원, 주계 보점 후 기준 41,402,109,58 66,528,030,15 87,120,216,40 |
| 007년 2009~20 * 외래 및 표1-1-2> 006년 007년 008년 | 195,920 17년 1인당 4 작집 의료를 사업 의료를 기반당소요된 의료를 의해진료비 262,000 331,000 282,313 | 요된 직접진 받은 인원은 이 오남용에 다 의래의료 받 은 인원 933 119 122 83 | 트비는 2006년 2006~2008년 한 작업의로: 비용계 24,366,000 39,389,000 26,474,000 23,316,164 | ~2008년 1인당 마약중독자 대 비 손실 비용 주 직접 1인당 소요된 직접의로비 1,216,000 1,140,000 1,131,725 | 조요된 외래 비 외래, 직접 에 (答 보고/ 연간기준 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 은 인원 77 79 106 65 | 진료비에 의료 의료 받은 인 (1 87p <표2- 전) 비용계 93,632,000 75,603,000 120,840,000 73,259,748 | 2 (1년 전 제출된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출된 기준 기출된 기준 기출된 기준 | .5%)를 반영해 지모해서 매년 표2-31-3>) 직접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 79 106 65 | 후) 비용계 251,174,000 430,254,000 242,841,280 | 1인당소요된 외래진료비 262,000 217,000 282,313 | 패서 산술됐음 외래의로 받은 인원 77,090 77,090 98,990 118,750 | 비용계 5,190,778,060 *********************************** | 1인당 소요 된 작업의로 1,216,000 97,000 1,140,000 1,131,725 | 마약 사용자 즉 직접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090 106,490 98,980 118,750 | 접 추계 전) 비용계 13,498,767,360 14,573,262,990 22,905,951,600 21,950,749,479 | 1인당 지출된 적접의료비 3,262,000 4,059,000 4,059,000 3,751,440 | 직접의료비(보장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090 106,490 98,980 118,750 | 率) 비용 계 36,211,331,520 56,024,069,530 91,557,243,460 72,762,305,000 | 마약 사용자 직접 보정 전 기준 18,689,545,420 25,077,223,610 28,468,924,540 31,047,109,600 | (단위, 원, 주계 보정 후 기준 41,402,109,58 66,528,030,15 87,120,216,40 81,838,665,12 |
| 017년 2009~20 * 외래 및 표1-1-2> 006년 007년 008년 009년 010년 | 195,920 17년 1인당 4 작집 의료를 작업 의료를 1인당소요된 외래진료비 262,000 331,000 217,000 282,313 286,548 | 요된 직접진. 받은 인원은 이 오남용에 C 외래의로 받 은 인원 93 119 122 83 82 | 교비는 2006년 2006-2008년 한 작전의로 비용계 24,366,000 39,389,000 26,474,000 23,316,164 23,417,796 | ~2008년 1인5 마약중독자 대 기 순설 비용 주 직접 1인당 소요된 1,216,000 957,000 1,131,725 1,148,701 | 강 소요된 외래 비 외래, 직접 계 (舊 보고) 제 건강기준 일의료비(보정 직접이로 받 은 인원 77 79 106 65 64 | 진료비에 의료 의료 받은 인 성 87p <표2- 전) 비용계 93,622,000 75,663,000 73,259,748 73,579,007 | 2수가 인상률(원 비중을 기준 31-1>~ 89p< 31-1>~ 89p< 1인당 지출원 3,262,000 3,679,000 4,059,000 3,751,440 3,807,712 | 5%)를 반영해 지로해서 매년 표2-31-3>) 직접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 79 106 65 64 | 작) 비용계 251,174,000 290,641,000 430,254,000 242,841,280 243,899,559 | 1인당소요된 외래진료비 262,000 331,000 217,000 282,313 286,548 | 해서 산울됐음 외래의로 받은 인원 77,090 98,980 118,750 97,320 | 비용계 5,190,778,060 ####### 5,562,972,940 9,096,360,121 7,566,632,336 | 1인당 소요 된 작업의로 1,216,000 957,000 1,140,000 1,131,725 1,148,701 | 마약 사용자 직 직접의료 반은 인원 77,090 106,490 98,980 118,750 97,320 | 접 추계 전) 비용계 13,498,767,360 14,573,262,990 22,995,951,600 21,950,749,479 18,259,291,616 | 1인당 지출된 정접의료비 3,262,000 3,679,000 4,059,000 3,751,440 3,807,712 | 직접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090 106,490 98,980 118,750 97,320 | 章) 計景 계 36,211,331,520 56,024,069,530 81,557,243,460 72,762,305,000 60,525,866,867 | 마약 사용자 작업 보정 전 기준 18,689,545,420 25,077,223,610 28,468,924,540 31,047,109,600 25,825,923,951 | (단위, 원, 주계 보정 후 기준 41.402.109.58 66.528.030.15 87.12.2.16.40 81.858.665.12 68.092.499,20 |
| 006년 007년 008년 009년 011년 011년 | 195,920 17년 1인당 4 작집 의료를 > 마약(Opioid 1인당소요된 외래진료비 262,000 217,000 223,313 265,548 290,846 | 요된 직접진 받은 인원은 이 오남용에 C 외래의로 받 은 인원 119 122 83 82 24 | 교비는 2006년 2006-2008년 화 작전의료 비용계 24,366,000 39,389,000 26,474,000 23,316,164 23,417,796 6,863,115 | -2008년 1인년 마약중독자 대 비 순설 비용 주 지접의료비 1,216,000 957,000 1,140,000 1,148,700 1,165,931 | 상 소요된 외래 비 외래, 직접 계 (舊 보고/ 연간기준 합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 은 인원 77 79 106 64 18 | 진료비에 의료받은 인 네 87p <표2- 전) 비용계 93.632,000 75.603,000 120,840,000 73.259,074 73,579,07 21,564,000 | 2수가 인상물(원 비중을 기준 31-1>- 89p< 1인당 지출된 적접의료비 3,262,000 3,679,000 4,059,000 3,751,440 3,807,712 3,807,712 3,807,712 3,807,712 | .5%)를 반영해 지모해서 매년 표2-31-3>) 직접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 79 106 65 | 후) 비용계 251,174,000 430,254,000 243,891,280 71,480,326 | 1인당소요된 외래진료된 일래진료된 262,000 331,000 217,000 265,548 290,846 | 의래의로 받은 인원 77,090 98,980 118,750 97,320 91,740 | 비용계 5,190,778,060 5,562,972,940 9,096,360,121 7,566,632,773,534 7,239,773,534 | 1인당 소요 및 작업의료 1,216,000 957,000 1,140,000 1,131,725 1,148,701 1,165,931 | 마약 사용자 직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090 106,490 98,980 118,750 97,320 91,740 | 접 추계 전) 비용계 13,498,767,360 22,905,951,600 21,950,749,479 18,259,291,616 17,470,543,290 | 1인당 지출된 적접의료비 3,262,000 4,059,000 3,751,440 3,807,712 3,864,827 | 직접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090 106,490 98,980 118,750 97,320 91,740 | 率) 划8 계 36,211,331,520 56,024,069,530 81,557,243,460 72,76,305,060,867 57,911,340,733 | 마약 사용자 직접 보정 전 기준 18,689,545,420 25,077,223,610 28,468,924,540 31,047,109,600 24,710,316,824 | (단위, 원, 주제 보정 후 기준 41.402.109.58 66.528.030.15 87.120.216.40 81.838.665.12 68.092.499.20 65.151.114.26 |
| 000년 - 의래 및 표1-1-2> 006년 007년 008년 010년 011년 012년 | 195,920 17년 1인당 4 직접 의료를 > 마약(Opioid 1인당소요된 외래컨료비 262,000 331,000 282,313 266,548 299,846 295,209 | 요된 직접진 받은 인원은 이 오남용에 대 의래의로 받은 인원 933 1199 122 83 82 24 47 | 교비는 2006년 2006~2008년 1한 작전의로 1한 작전의로 18한 작전의로 18한 작전의로 24,366,000 26,474,000 23,316,164 23,417,796 6,863,115 1,981,176 | -2008년 1인년 마약중독자 대 비 손설 비용 주 1인당 소요된 직접의로비 1,216,000 9,7,000 1,140,000 1,140,701 1,148,701 1,168,931 | * 소요된 외래 비 외래, 직접 연간기준 연간기준 의료비(보정 전의로 받 은 인원 77 77 79 106 65 64 18 | 진료비에 의료 의료 받은 인 (1 87p <표2- 전) 비용계 93,632,000 75,603,000 120,840,000 73,259,748 73,579,007 21,564,000 6,224,874 | 2수가 인상물(원 비중을 기준 31-1>~ 89p< 11인당 지출된 적합의료비 3,262,000 3,751,440 3,807,712 3,804,827 3,922,800 | .5%)를 반영해 지로해서 매년 표2-31-3>) 작업의료비(보정 작업의료 받은 인원 77 79 106 65 64 18 | 환) 비용계 251,174,000 290,641,000 430,254,000 242,841,280 243,899,559 20,634,209 | 1인당소요된 의 기준치를 곱 의해진료비 262,000 217,000 282,313 286,548 299,846 | 의래의로 받은 인원 77,090 98,980 118,750 91,740 92,550 | 비용계 5,190,778,060 9,096,360,121 7,566,632,336 7,239,773,534 7,413,258,887 | 1인당 소요 된 작절의로 1,216,000 9,7,000 1,140,000 1,131,725 1,148,701 1,165,931 1,183,420 | 마약 사용자 직 직접의료비(보경 적접의료 받은 인원 106,490 98,980 118,750 97,320 91,740 92,550 | 접 추계 전) 13,498,767,360 14,573,262,990 22,905,951,600 21,950,749,479 18,259,291,616 17,470,548,90 17,889,168,430 | 1인당 지출된 적접의료비 3,262,000 3,679,000 4,059,000 3,751,440 3,807,712 3,864,827 3,962,807 | 직접의료비(보장 직접의료 받은 인원 17,090 18,980 118,750 91,740 92,550 | 率) 36,211,331,520 56,024,069,530 81,557,243,460 72,762,305,000 60,522,866,867 75,7911,340,733 59,299,006,200 | 마약 사용자 작첩 보정 전 기준 18,689,545,420 25,077,223,610 26,468,924,540 31,047,109,600 25,825,923,951 42,710,316,824 25,302,427,317 | (단위, 원, 주계 보점 후 기준 41,402,109,58 66,528,030,15 87,120,216,40 81,858,665,12 68,092,499,20 65,151,111,266 |
| 2009-20 - 외래 및 표1-1-2> 2006년 2007년 2008년 2019년 2019년 2012년 2013년 | 195,920)17년 1인당 4 직접 의료를 - 마약(Opioid)1인당소요된 의래진료비 262,000 331,000 217,000 282,313 286,548 290,846 295,209 299,637 | 요된 직접진 받은 인원은 이 오남용에 다 외래의로 받 은 인원 119 122 83 82 24 7 | 교비는 2006년 2006~2008년 비용계 24,366,000 39,389,000 23,316,164 23,417,796 6,863,115 1,981,176 5,675,906 | -2008년 1인년 마약중독자 대 비 손실 비용 주 1인당 소요된 직접의료비 1,216,000 957,000 1,131,725 1,148,701 1,165,931 1,168,420 1,201,172 | 상 소요된 외래 비 외래, 직접 계 (舊 보고) 연간기준 의료비(보정 직접의로 받 은 인원 77 79 106 65 64 18 5 | 진료비에 의료 의료 받은 인 해 87p <표2- 전) 비용계 93,632,000 75,603,000 75,603,000 75,259,748 73,579,007 21,564,000 6,224,001 17,833,772 | 2수가 인상률((원 비중을 기준 31-1>~ 89p< 31-1>~ 89p< 1-10당 지출된 적접의료비 3,262,000 3,679,000 4,059,000 3,751,440 3,807,712 3,864,827 3,922,800 3,981,642 | 5%)를 반영해 지로해서 매년 표2-31-3>) 직접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 79 106 65 64 18 8 5 | 후) 비용계 251,174,000 290,641,000 430,254,000 242,841,280 243,899,559 71,480,326 20,634,209 59,115,345 | 1인당소요된 외래진료비 262,000 331,000 217,000 282,313 286,548 290,846 295,209 299,637 | 의래의료 받은 인원 77,090 77,090 98,980 91,740 91,740 92,550 97,640 | 비용계 5,190,778,060 ########## 5,562,972,940 9,096,360,121 7,566,632,336 7,239,773,534 7,938,279,046 | 1인당 소요 된 직접의로 1,216,000 957,000 1,140,000 1,181,725 1,148,701 1,165,931 1,183,420 1,201,172 | 마약 사용자 직 직접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090 106,490 98,980 91,740 97,320 91,740 92,550 97,640 | 접 추계 전) 비용계 13,498,767,360 14,573,262,990 21,955,749,479 18,259,291,616 17,470,543,290 19,156,130,900 | 1인당 지출된 적접의료비 3,262,000 3,679,000 4,059,000 3,751,440 3,807,712 3,824,827 3,922,800 3,981,642 | 직접의료비(보장 직접의료 받은 만원 77,090 106,490 98,980 91,740 97,320 91,740 92,550 97,640 | 等) 36,211,331,520 56,024,069,530 72,762,305,000 60,525,866,867 57,911,340,733 59,299,006,200 63,498,695,730 | 마약 사용자 직접 보정 전 기준 18,689,545,420 25,077,223,610 31,047,109,600 25,825,923,951 24,710,316,824 25,302,427,317 27,094,409,946 | (단위, 원, 주계 보정 후 기준 41.402.109.58 66.528.030.15 87.120.216.40 81.838.665,12 68.092.499.20 65.151.114.26 66.712.265.08 71.436.974,77 |
| 2009-20 · 외래 및 표1-1-2> 2009-20 · 외래 및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 195,920 17년 1인당 4 직접 의료를 > 마약(Opioid 1인당소요된 의해진료비 262,000 331,000 217,000 282,313 266,548 290,846 295,209 299,637 304,131 | 요된 직접진 받은 인원은 이 오남용에 대 의래의로 받 은 인원 93 119 122 83 82 24 7 19 19 19 | 표비는 2006년 2006~2008년 한 작집의료비 원 4점의료비 원 4점의료비 원 43,366,000 26,474,000 23,316,164 23,417,796 6,863,115 1,981,176 6,452,338 | -2008년 1인당 마약중독자 대 회 순설 비용 주 지점의로비 1216,000 1,140,000 1,148,700 1,165,931 1,188,420 1,201,172 1,201,172 1,201,172 1,201,172 1,201,172 | * 소요된 외래 비 외래, 직접 '계 (품보고/ '계 (품보고/ '연간기준 의료반(보쟁 직접의로 반 은 안원 77 79 106 65 64 18 5 15 | 진료비에 의료 받은 인 의료 받은 인 의용 받은 인 의용 발은 인 의용 (187) 비용계 의 (182,840,000 73,259,070 21,564,000 6,224,874 17,833,779,27 20,273,423 | 2수가 인상품(원 비중을 기준 31-1>- 89p< 1인당 지출된 작전의료비 3,262,000 4,059,000 4,059,000 4,059,000 3,751,440 3,807,712 3,804,827 3,921,642 4,041,366 | .5%)를 반영해 치로해서 매년 표2-31-3>) 작업의료비(보정 작업의료 받은 인원 77 79 106 65 64 18 5 | 후) 비용계 251,174,000 290,641,000 430,254,000 242,841,280 243,899,59 71,480,326 20,634,209 50,634,209 50,70,20,314 | 1인당소요된 의 기준지를 곱 1인당소요된 의례진료비 262,000 217,000 222,313 265,548 290,846 295,209 299,637 304,131 | 의래의로 받은 인원 77,090 98,980 118,750 97,320 91,740 92,550 97,640 99,840 | 비용계 5,190,778,060 ######### 5,562,972,940 9,096,360,121 7,566,632,373,534 7,243,258,887 7,413,258,887 7,938,279,046 8,238,884,460 | 1인당 소요 된 직접이로 1,216,000 1,140,000 1,131,725 1,148,701 1,165,931 1,183,420 1,201,722 1,201,722 | 마약 사용자 직 직접의료 반은 인원 77,090 106,490 98,980 118,750 97,740 92,550 97,640 99,840 | 접 추계 전) 비용계 13,498,767,360 14,573,262,990 22,905,951,600 21,950,749,479 18,259,291,616 17,470,543,290 17,889,168,430 19,156,130,000 19,881,558,861 | 1인당 지출된 정접의료비 3,22000 4,059,000 4,059,000 3,751,440 3,807,712 3,864,827 3,921,642 4,041,366 | 직접의료비(보전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090 106,490 98,980 118,750 97,740 92,550 97,640 99,840 | 率) 비용 계 36,211,331,520 56,024,069,530 81,557,243,460 72,762,305,000 60,525,866,867 57,911,340,733 59,299,006,200 63,496,695,303,363,635 | 마약 사용자 직접 보정 전 기준 18,689,545,420 25,077,223,610 28,468,924,540 31,047,109,600 15,825,923,923 24,710,316,824 25,302,427,317 27,094,409,946 28,120,443,320 | (단위, 원, 주제 보정 후 기준 41,402,109,58 66,528,030,15 87,120,216,40 81,838,665,12 66,712,265,08 71,436,974,77 74,142,248,09 |
| ** 외래 및 <표1-1-2> 2006년 2007년 2008년 | 195,920 017년 1인당 4 직접 의료를 > 마약(Opioid 1인당소요된 외래진료비 262,000 331,000 217,000 | 요된 직접진 받은 인원은 I) 오남용에 대 외래의료 받 은 인원 119 122 | 료비는 2006년 2006~2008년 한 작업의로 비용계 24,366,000 39,389,000 26,474,000 | ~2008년 1인당 마약중독자 대 비 손실 비용 주 작업당 소요된 직접의료비 1,216,000 957,000 1,140,000 | 상 소요된 외래 비 외래, 작접 비 외래, 작접 연간기준 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 은 인원 77 79 | 진료비에 의료 의료 받은 인 네 87p <표2- 전) 비용계 93,632,000 75,603,000 120,840,000 | 2수가 인상률(1 원 비중을 기준 31-1>~ 89p< 1인당 지출된 작업의료비 3,262,000 4,059,000 | 5%)를 반영해 처로해서 매년 표2-31-3>) 작업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 79 | 산출했음 마약중독자에 (후) 비용 계 251,174,000 290,641,000 430,254,000 | 1인당소요된 외래진료비 262,000 331,000 217,000 | 해서 산출됐음 외래의로 받은 인원 77,090 77,090 98,980 | 비용계 5,190,778,060 ######### 5,562,972,940 | 1인당 소요 된 직접의료 1,216,000 957,000 1,140,000 | 마약 사용자 직 직접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090 106,490 98,980 | 전 추계 전) 비용계 13,498,767,360 22,905,951,600 | 1인당 지출된 직접의료비 3,262,000 3,679,000 4,059,000 | 직접의료비(보장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090 106,490 98,980 | 후) 비용계 36,211,331,520 56,024,069,530 81,557,243,460 | 마약 사용자 직접 보정 전 기준 18,689,545,420 25,077,223,610 28,468,924,540 | (단· 주계 보정 후 기위 41,402, 66,528, 87,120, |
| 2009~20 의래 및 표1-1-2> 2006년 2007년 2009년 2019년 2019년 2019년 2019년 2019년 2019년 2019년 2019년 2019년 2019년 2019년 2019년 2019년 2019년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 195,920)17년 1인당 4 직접 의료를 - 마약(Opioid)1인당소요된 의래진료비 262,000 331,000 217,000 282,313 286,548 290,846 295,209 299,637 | 요된 직접진 받은 인원은 이 오남용에 다 외래의로 받 은 인원 119 122 83 82 24 7 | 표비는 2006년 2006~2008년 한 작집의료비 원 4점의료비 원 4점의료비 원 43,366,000 26,474,000 23,316,164 23,417,796 6,863,115 1,981,176 6,452,338 | -2008년 1인년 마약중독자 대 비 손실 비용 주 1인당 소요된 직접의료비 1,216,000 957,000 1,131,725 1,148,701 1,165,931 1,168,420 1,201,172 | * 소요된 외래 비 외래, 직접 '계 (품보고/ '계 (품보고/ '연간기준 의료반(보쟁 직접의로 반 은 안원 77 79 106 65 64 18 5 15 | 진료비에 의료 의료 받은 인 해 87p <표2- 전) 비용계 93,632,000 75,603,000 75,603,000 75,259,748 73,579,007 21,564,000 6,224,001 17,833,772 | 2수가 인상률((원 비중을 기준 31-1>~ 89p< 31-1>~ 89p< 1-10당 지출된 적접의료비 3,262,000 3,679,000 4,059,000 3,751,440 3,807,712 3,864,827 3,922,800 3,981,642 | 5%)를 반영해 지로해서 매년 표2-31-3>) 직접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 79 106 65 64 18 8 5 | 후) 비용계 251,174,000 290,641,000 430,254,000 242,841,280 243,899,559 71,480,326 20,634,209 59,115,345 | 1인당소요된 외래진료비 262,000 331,000 217,000 282,313 286,548 290,846 295,209 299,637 | 의래의료 받은 인원 77,090 77,090 98,980 91,740 91,740 92,550 97,640 | 비용계 5,190,778,060 ########## 5,562,972,940 9,096,360,121 7,566,632,336 7,239,773,534 7,938,279,046 | 1인당 소요 된 직접의로 1,216,000 957,000 1,140,000 1,181,725 1,148,701 1,165,931 1,183,420 1,201,172 | 마약 사용자 직 직접의료비(보정 직접의료 받은 인원 77,090 106,490 98,980 91,740 97,320 91,740 92,550 97,640 | 접 추계 전) 비용계 13,498,767,360 14,573,262,990 21,955,749,479 18,259,291,616 17,470,543,290 19,156,130,900 | 1인당 지출된 적접의료비 3,262,000 3,679,000 4,059,000 3,751,440 3,807,712 3,824,827 3,922,800 3,981,642 | 직접의료비(보장 직접의료 받은 만원 77,090 106,490 98,980 91,740 97,320 91,740 92,550 97,640 | 等) 36,211,331,520 56,024,069,530 72,762,305,000 60,525,866,867 57,911,340,733 59,299,006,200 63,498,695,730 | 마약 사용자 직접 보정 전 기준 18,689,545,420 25,077,223,610 31,047,109,600 25,825,923,951 24,710,316,824 25,302,427,317 27,094,409,946 | (단위, 1 주계 보정 후 기준 41,402,109 66,528,030 87,120,216 81,858,665 68,092,495 65,712,114 66,712,65 71,436,974 |

| 丑2-1-1: | > 노동 생산성 손실 비용 | 산출의 근거 (舊 | 보고서 126p < | ⊞2-39>) | |
|---------|----------------|-----------|------------|--------------------|------------|
| | | | | | (단위 : 명, % |
| 연도 | 구분 | 마약사범 | 항정사범 | 대마사범 | 계 |
| | 생산가능인구 | 868 | 6,006 | 835 | 7,709 |
| | 취업자 | 556 | 3,543 | 606 | 4,705 |
| | 실업자 | 256 | 2,400 | 204 | 2,860 |
| | 비경제활동인구 | 56 | 63 | 25 | 144 |
| 2006년 | : 가사 | 52 | 30 | 5 | 87 |
| | : 학생 | 4 | 33 | 20 | 57 |
| | 경제활동참가율(%) | 94% | 99% | 97% | 99% |
| | 고용률(%) | 64% | 59% | 73% | 62% |
| | 실업률(%) | 32% | 40% | 25% | 38% |
| | | 마약사범 | 항정사범 | 대마사범 | 계 |
| | 생산가능인구 | 958 | 8,521 | 1,170 | 10,649 |
| | 취업자 | 577 | 5,087 | 861 | 6,525 |
| | 실업자 | 336 | 3,372 | 271 | 3,979 |
| | 비경제활동인구 | 45 | 62 | 38 | 145 |
| 2007년 | : 가사 | 45 | 27 | 8 | 80 |
| | : 학생 | 0 | 35 | 30 | 65 |
| | 경제활동참가율(%) | 95% | 99% | 97% | 96% |
| | 고용률(%) | 60% | 60% | 74% | 61% |
| | 실업률(%) | 37% | 40% | 24% | 38% |
| | | 마약사범 | 항정사범 | 대마사범 | 계 |
| | 생산가능인구 | 1,396 | 7,457 | 1,045 | 9,898 |
| | 취업자 | 913 | 4,893 | 801 | 6,607 |
| | 실업자 | 401 | 2,494 | 229 | 3,124 |
| | 비경제활동인구 | 82 | 70 | 15 | 167 |
| 2008년 | : 가사 | 82 | 40 | 2 | 124 |
| | : 학생 | 0 | 30 | 13 | 43 |
| | 경제활동참가율(%) | 94% | 99% | 99% | 96% |
| | 고용률(%) | 65% | 66% | 77% | 67% |
| | 실업률(%) | 31% | 34% | 22% | 32% |
| | | 마약사범 | 항정사범 | 대마사범 | 계 |

| | | | | (단위 : 원) |
|--------|----------------|-------------|---------------|----------------|
| | 구분 | 1인당 비용 | 전체비용 | 암수율을 고려한 경우 |
| | 생산성저하로 인한 손실비용 | 83,625 | 672,181,195 | 6,446,684,300 |
| FLOOR | 조기사망비용 | 487,368,236 | 974,736,472 | 974,736,472 |
| 2006년 | 실직비용 | 115,984 | 339,485,453 | 8,941,214,066 |
| | 총계 | 487,567,845 | 1,986,403,120 | 16,362,634,838 |
| | 생산성저하로 인한 손실비용 | 60,255 | 641,298,971 | 6,416,605,038 |
| 2007년 | 조기사망비용 | 644,032,655 | 2,576,130,618 | 2,576,130,618 |
| 2007년 | 실직비용 | 83,943 | 334,009,881 | 8,939,108,376 |
| | 총계 | 644,176,853 | 3,551,439,470 | 17,931,844,032 |
| | 생산성저하로 인한 손실비용 | 70,318 | 704,377,558 | 6,960,096,904 |
| FIGOR | 조기사망비용 | - | - | |
| 2008년 | 실직비용 | 106,400 | 336,863,312 | 10,531,500,512 |
| | 총계 | 176,718 | 1,041,240,870 | 17,491,597,416 |
| | 생산성저하로 인한 손실비용 | 60,809 | 722,105,562 | 7,221,055,624 |
| FLOODS | 조기사망비용 | 527,760,303 | 1,583,280,909 | 1,583,280,909 |
| 2009년 | 실직비용 | 105,111 | 373,248,174 | 12,481,898,249 |
| | 총계 | 527,926,223 | 2,678,634,645 | 21,286,234,782 |

538,315,509

538,519,927

76,669

127,749

744,839,395

1,614,946,527

2,741,115,745

381,329,823

7,461,427,681

1,614,946,527

12,432,501,970

21,508,876,178

<표2-1>연도별 마약사용에 따른 손실 중 생산성 손실 비용 요약 (舊 보고서 126p <표2-45>)

생산성저하로 인한 손실비용

조기사망비용

실직비용

총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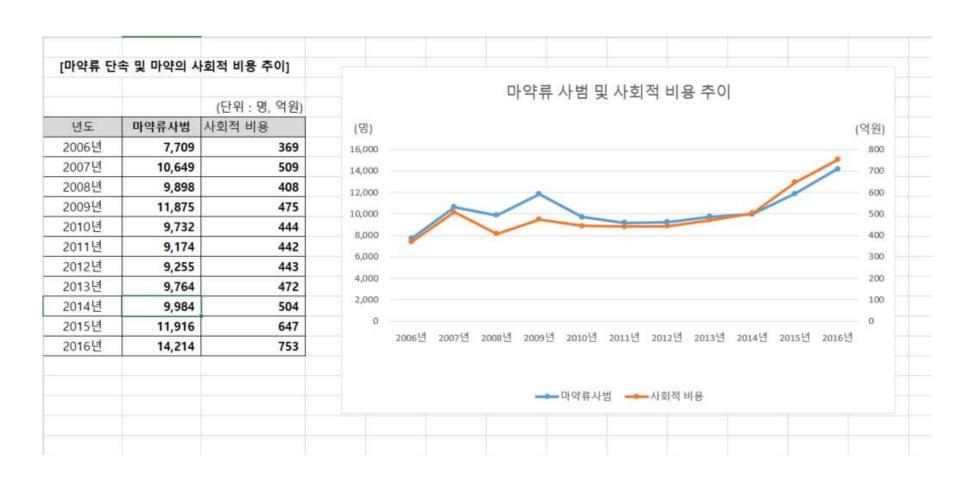
2010년

| DIOCE | F 0 | +1 -0151 +1111 | Maria Commence | | | | = 01=1 - 01F1 =1 | at at Maria Co. comments. | |
|--------------|------------|----------------|----------------------|---|-----------|-------|------------------|---------------------------|---|
| 3-1] 마약류 | 등으로 인 | 안 1인당 명사시 | 법비용 (2009~12년 | 1, 5개년도) | [#3-1] UP | 대유 등으 | 도 인안 1인당 영 | 사사법비용 (2013년~16 | 5년, 5개년도) |
| | | | | | | | | | |
| 년도 | 7 | |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 | 년도 | | 구분 |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 |
| | | 찰 | 2,810,610 | 3,039,217 | | | 경찰 | 4,069,432 | 4,396,513 |
| | 검 | 찰 | 578,923 | 296,080 | | | 검찰 | 740,322 | 378,259 |
| | FI P | 원 | 61,879 | 61,879 | | | 법원 | 83,748 | 83,748 |
| 2009년 | | 교도소 | 3,423,737 | 3,423,737 | 2013년 | | 교도소 | 4,362,824 | 4,362,824 |
| | 교정 | 치료감호 | 3,578,344 | 3,578,344 | | 교정 | 치료감호 | 3,069,444 | 3,069,444 |
| | | 보호관찰 | 101,515 | 101,515 | | | 보호관찰 | 139,334 | 139,334 |
| | 합 | 계 | 10,555,008 | 10,500,772 | | | 합계 | 12,465,104 | 12,430,122 |
| 년도 | 7 | M . |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 | 년도 | | 구분 |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 |
| D.E. | | 찰 | | 11.7.1.1.1. | E.A. | | 경찰 | | 77.7.7.7.7 |
| - | | 찰 | 3,283,592 712,149 | 3,553,130 343,021 | | | OB 검찰 | 4,325,482 715,733 | 4,672,573 399,888 |
| | 010년 교정 | | | *************************************** | | | 11년 11년 | | |
| 204018 | | | 78,422 | 78,422 | 2014년 | | 교도소 | 84,981 | 84,981 |
| 2010년 | | 교도소 | 3,890,544 | 3,890,544 | | 77.74 | | 4,374,781 | 4,374,781 |
| | | 치료감호 | 3,976,985 | 3,976,985 | | 교정 | 치료감호 | 4,083,480 | 4,083,480 |
| - | - | 보호관찰 | 112,309 | 112,309 | | | 보호관찰 | 145,896 | 145,896 |
| | 입 | 계 | 12,054,001 | 11,954,411 | - | | 합계 | 13,730,353 | 13,761,599 |
| 년도 | 7 | 분 |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 | 년도 | | 구분 |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 |
| | 경 | 찰 | 3,697,854 | 3,995,038 | | 경찰 | | 4,695,057 | 5,078,973 |
| | 검 | 찰 | 799,091 | 394,201 | | 검찰 | | 683,516 | 416,136 |
| | 5 | 원 | 77,099 | 77,099 | | | 법원 | 78,613 | 78,613 |
| 011년 | | 교도소 | 4,368,459 | 4,368,459 | 2015년 | | 교도소 | 4,308,153 | 4,308,153 |
| ×1.7.5.4.4.2 | 교정 | 치료감호 | 3,503,719 | 3,503,719 | | 교정 | 치료감호 | 5,263,385 | 5,263,385 |
| | | 보호관찰 | 119,097 | 119,097 | | | 보호관찰 | 141,217 | 141,217 |
| | 8 | 계 | 12,565,319 | 12,457,613 | | | 합계 | 15,169,941 | 15,286,477 |
| 13.0 | 7 | | | 24452 | (5'0 | | 구분 | m: 0.4 M |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
| 년도 | | - |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 | 년도 | | 구문 경찰 |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 |
| | 경 | 77 | 4,029,425 | 4,354,706 | | | | 4,604,038 | 4,978,172 |
| | 검 | | 748,637 | 369,392 | | | 검찰 | 676,332 | 442,092 |
| | ď | | 78,279 | 78,279 | ****** | | 법원 | 93,653 | 93,653 |
| 2012년 | - | 교도소 | 4,464,298 | 4,464,298 | 2016년 | | 교도소 | 4,285,583 | 4,285,583 |
| | 교정 | 치료감호 | 3,431,727 | 3,431,727 | | 교정 | 치료감호 | 6,228,980 | 6,228,980 |
| | | 보호관찰 | 113,622 | 113,622 | | | 보호관찰 | 137,591 | 137,591 |
| - 1 | 함 | 계 | 12,865,988 | 12,812,024 | | | 합계 | 16,026,177 | 16,166,071 |

| | | | | 154p <#2-58>) | | | | | | | |
|----------|---------|--|------------------|-------------------------|----------------|----------|--------|-----------|-------------------|----------------|---------------|
| [3-1] 마약 | 류 등으로 인 | 한 행사사법비 | 용 (2009~12년, 5개년 | <u> 1</u> 도) | | [표3-1] 마 | 약류 등으 | 로 인한 형사사법 | 비용 (2013년~16년, 52 | 개년도)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원) | | | | | | (단위 : |
| 년도 | 구 | | 마약류 | 유해화락물질 | 7 | 년도 | | 구분 |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 | 계 |
| | 경 | | 21,790,660,387 | 3,182,059,928 | 24,972,720,315 | | | 경찰 | 20,546,564,539 | 2,998,422,098 | 23,544,986,6 |
| | 검 | | 6,874,708,731 | 376,206,617 | 7,250,915,348 | | | 검찰 | 7,228,501,567 | 395,185,440 | 7,623,687,0 |
| 9223 | Ħ | - | 381,770,626 | 40,467,686 | 422,238,312 | 703 | | 법원 | 451,233,474 | 47,830,748 | 499,064,2 |
| 2009년 | 222 | 교도소 | 8,857,207,619 | 910,714,042 | 9,767,921,661 | 2013년 | 22.0 | 교도소 | 10,933,236,944 | 1,125,608,592 | 12,058,845,5 |
| | 교정 | 치료감호 | 171,760,512 | 250,484,080 | 422,244,592 | | 교정 | 치료감호 | 328,430,508 | 481,902,708 | 810,333,2 |
| | | 보호관찰 | 290,332 | 290,332,900 290,332,900 | | 보호관찰 | | 388,881, | | 388,881,1 | |
| | ģi. | 계 | | 43,126,373,128 | | | | 합계 | | 44,925,797,812 | |
| 년도 | 7 | 분 |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 | 74 | 년도 | | 구분 |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 | Я |
| _ | 경 | | 17,790,503,961 | 2,597,337,928 | 20,387,841,889 | | | 경찰 | 22,769,336,232 | 3,322,199,525 | 26.091.535.7 |
| | 75 | 찰 | 6.930,633,447 | 357,196,224 | 7,287,829,671 | | | 검찰 | 7,145,879,137 | 427,195,677 | 7,573,074,8 |
| | 번 | | 494,907,334 | 52,460,177 | 547,367,511 | | | 변원 | 458,967,800 | 48,650,587 | 507,618,3 |
| 2010년 | | 교도소 | 9.660.220.752 | 992.088.720 | 10,652,309,472 | 2014년 | | 교도소 | 11.470.675.782 | 1,181,190,870 | 12,651,866,6 |
| 170 | 교정 | 치료감호 | 338.043.725 | 497,123,125 | 835,166,850 | | 교정 | 치료감호 | | 502,268,040 | 845.280.3 |
| | 100 | 보호관찰 | 330.862 | 2314 | 330,862,314 | | 574 | 보호관찰 | 401.359 | | 401,359,8 |
| | Š. | 계 | | 40,041,377,707 | 30300000 | | | 합계 | | 48,070,735,866 | |
| | | | | | | | | | | | |
| 년도 | 구 | The same of the sa | 마약류 | 유해화락물질 | A | 년도 | | 구분 |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 | 계 |
| | 78 | | 18,426,404,686 | 2,688,660,491 | 21,115,065,177 | | | 경찰 | 32,456,932,185 | 4,738,681,723 | 37,195,613,90 |
| | 검 | | 7,330,865,408 | 386,954,659 | 7,717,820,067 | | | 검찰 | 8,144,781,678 | 530,577,902 | 8,675,359,5 |
| | 51 | | 408,852,358 | 43,338,350 | 452,190,708 | 799 | | 법원 | 466,211,793 | 49,418,450 | 515,630,24 |
| 2011년 | 60000 | 교도소 | 10,475,564,682 | 1,074,640,914 | 11,550,205,596 | 2015년 | 656501 | 교도소 | 12,144,683,307 | 1,249,364,370 | 13,394,047,6 |
| | 교정 | 치료감호 | 364,386,776 | 532,565,288 | 896,952,064 | | 교정 | 치료감호 | 347,383,410 | 510,548,345 | 857,931,7 |
| | 25 | 보호관찰 | 337,520 | 898 | 337,520,898 | | | 보호관찰 | 393,571, | 779 | 393,571,7 |
| | 합 | 계 | | 42,069,754,510 | | | | 합계 | | 61,032,154,942 | |
| 년도 | 7 | 부 |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 | Я | 년도 | | 구분 |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 | 24 |
| | 경 | | 19.063,209.769 | 2.782.656.909 | 21,845,866,678 | | | 경찰 | 38,871,895,320 | 5,675,116,386 | 44,547,011,7 |
| | 검 | 찰 | 6,928,638,292 | 365,803,544 | 7,294,441,836 | | | 검찰 | 9,613,377,816 | 672,376,941 | 10,285,754,75 |
| | E E | 원 | 406,938,959 | 43,135,530 | 450,074,489 | | | 법원 | 692,792,910 | 73,436,048 | 766,228,9 |
| 2012년 | | 교도소 | 10,620,564,942 | 1,093,753,010 | 11,714,317,952 | 2016년 | | 교도소 | 12,663,897,765 | 1,302,817,232 | 13,966,714,9 |
| | 교정 | 치료감호 | 329,445,792 | 483,873,507 | 813,319,299 | | 교정 | 치료감호 | 323,906,960 | 473,402,480 | 797,309,4 |
| | 182 | 보호관찰 | 321,436 | (638 | 321,436,638 | | | 보호관찰 | 401,628, | 129 | 401,628,1 |
| | 함 | - | | 42,439,456,892 | 5-34-54-54 | | | 합계 | | 70,764,647,987 | |

| | | | 2-49>) | | | | (단위 : 원, 건, 명 |
|--------|------|-------------------|-----------|---------|----------------|---------|---------------|
| 연도 | 유형 | 경찰예산 | *총범죄건수 | 유형별범죄건수 | 유형별총예산 | *유형별범죄자 | 1인당 비용 |
| | 마약류 | 6,251,200,000,000 | 1,408,754 | 3,641 | 16,156,560,478 | 4,994 | 3,235,194 |
| 2006년 | 유해화학 | 6,251,200,000,000 | 1,408,754 | 613 | 2,720,124,024 | 718 | 3,788,473 |
| 200713 | 마약류 | 6,958,500,000,000 | 1,563,395 | 5,221 | 23,302,056,422 | 7,189 | 3,241,348 |
| 2007년 | 유해화학 | 6,958,500,000,000 | 1,563,395 | 660 | 3,091,391,399 | 802 | 3,854,602 |
| 2008년 | 마약류 | 6,984,400,000,000 | 1,812,373 | 4,929 | 18,951,468,539 | 6,728 | 2,787,800 |
| 2000 전 | 유해화학 | 6,984,400,000,000 | 1,812,373 | 701 | 2,695,268,704 | 1,013 | 2,660,679 |
| 2009년 | 마약류 | 7,239,000,000,000 | 2,020,148 | 6,081 | 21,790,660,387 | 7,753 | 2,810,610 |
| 2009년 | 유해화학 | 7,239,000,000,000 | 2,020,148 | 888 | 3,182,059,928 | 1,047 | 3,039,217 |
| 2010년 | 마약류 | 7,503,600,000,000 | 1,785,376 | 4,233 | 17,790,503,961 | 5,418 | 3,283,592 |
| 2010년 | 유해화학 | 7,503,600,000,000 | 1,785,376 | 618 | 2,597,337,928 | 731 | 3,553,130 |
| 2011년 | 마약류 | 7,763,000,000,000 | 1,752,598 | 4,160 | 18,426,404,686 | 4,983 | 3,697,854 |
| 2011년 | 유해화학 | 7,763,000,000,000 | 1,752,598 | 607 | 2,688,660,491 | 673 | 3,995,038 |
| 2012년 | 마약류 | 8,010,300,000,000 | 1,793,400 | 4,268 | 19,063,209,769 | 4,731 | 4,029,425 |
| 2012년 | 유해화학 | 8,010,300,000,000 | 1,793,400 | 623 | 2,782,656,909 | 639 | 4,354,706 |
| 201213 | 마약류 | 8,299,400,000,000 | 1,857,276 | 4,598 | 20,546,564,539 | 5,049 | 4,069,432 |
| 2013년 | 유해화학 | 8,299,400,000,000 | 1,857,276 | 671 | 2,998,422,098 | 682 | 4,396,513 |
| 201413 | 마약류 | 8,395,000,000,000 | 1,778,966 | 4,825 | 22,769,336,232 | 5,264 | 4,325,482 |
| 2014년 | 유해화학 | 8,395,000,000,000 | 1,778,966 | 704 | 3,322,199,525 | 711 | 4,672,573 |
| 201514 | 마약류 | 9,425,000,000,000 | 1,861,657 | 6,411 | 32,456,932,185 | 6,913 | 4,695,057 |
| 2015년 | 유해화학 | 9,425,000,000,000 | 1,861,657 | 936 | 4,738,681,723 | 933 | 5,078,973 |
| 201517 | 마약류 | 9,809,200,000,000 | 1,849,450 | 7,329 | 38,871,895,320 | 8,443 | 4,604,038 |
| 2016년 | 유해화학 | 9,809,200,000,000 | 1,849,450 | 1,070 | 5,675,116,386 | 1,140 | 4,978,172 |

| | | | (단위 : 원) | | | | (단위 : 원 |
|-------|---------|----------------|----------------------------------|-------|---------|-------------|-------------|
| 연도 | 구분 | 비용 | 합계 | 연도 | 구분 | 비용 | 합계 |
| | 치료비용 | 1,743,833,000 | | | 치료비용 | 3,278,000 | |
| 2006년 | 생산성손실비용 | 1,986,403,120 | 36,905,959,775 | 2006년 | 생산성손실비용 | 487,567,845 | 501,146,253 |
| | 형사사법비용 | 33,175,723,655 | | | 형사사법비용 | 10,300,408 | |
| | 치료비용 | 2,268,961,000 | | | 치료비용 | 3,993,000 | |
| 2007년 | 생산성손실비용 | 3,551,439,470 | 50,940,071,205 | 2007년 | 생산성손실비용 | 644,176,853 | 659,227,643 |
| | 형사사법비용 | 45,119,670,735 | | | 형사사법비용 | 11,057,790 | |
| | 치료비용 | 2,197,038,000 | | | 치료비용 | 4,446,000 | |
| 2008년 | 생산성손실비용 | 1,041,240,870 | 40,802,138,848 | 2008년 | 생산성손실비용 | 176,718 | 15,935,995 |
| | 형사사법비용 | 37,563,859,978 | | | 형사사법비용 | 11,313,277 | |
| | 치료비용 | 1,656,534,371 | | | 치료비용 | 4,202,019 | |
| 2009년 | 생산성손실비용 | 2,678,634,645 | 47,461,542,145 | 2009년 | 생산성손실비용 | 527,926,223 | 542,683,250 |
| | 형사사법비용 | 43,126,373,128 | Brown Compartment of Compartment | | 형사사법비용 | 10,555,008 | |
| | 치료비용 | 1,663,752,320 | | | 치료비용 | 4,265,047 | |
| 2010년 | 생산성손실비용 | 2,741,115,745 | 44,446,245,772 | 2010년 | 생산성손실비용 | 538,519,927 | 554,838,975 |
| | 형사사법비용 | 40,041,377,707 | | | 형사사법비용 | 12,054,001 | |
| | 치료비용 | 487,600,779 | | | 치료비용 | 4,329,024 | |
| 2011년 | 생산성손실비용 | 1,665,122,269 | 44,222,477,559 | 2011년 | 생산성손실비용 | 549,289,244 | 566,183,587 |
| | 형사사법비용 | 42,069,754,510 | | | 형사사법비용 | 12,565,319 | |
| | 치료비용 | 140,755,667 | | | 치료비용 | 4,393,962 | |
| 2012년 | 생산성손실비용 | 1,741,868,539 | 44,322,081,099 | 2012년 | 생산성손실비용 | 560,286,164 | 577,546,114 |
| | 형사사법비용 | 42,439,456,892 | | | 형사사법비용 | 12,865,988 | |
| | 치료비용 | 403,253,597 | | | 치료비용 | 4,459,871 | |
| 2013년 | 생산성손실비용 | 1,826,327,538 | 47,155,378,947 | 2013년 | 생산성손실비용 | 571,507,435 | 588,432,410 |
| | 형사사법비용 | 44,925,797,812 | | | 형사사법비용 | 12,465,104 | |
| | 치료비용 | 458,418,984 | | | 치료비용 | 4,526,772 | |
| 2014년 | 생산성손실비용 | 1,892,354,688 | 50,421,509,538 | 2014년 | 생산성손실비용 | 582,945,338 | 601,202,463 |
| | 형사사법비용 | 48,070,735,866 | > .7 | | 형사사법비용 | 13,730,353 | |







암수 범죄 추정 기법에 대한 연구 - 신고율 모형의 한계 및 개선 방향 제시

1. 범죄와 범죄통계

범죄(犯罪)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유해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는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정의되는데,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제정돼 있는 형법을 전제로 범죄의 개념을 파악한 것이다.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형식적인 규정과는 상관없이 범죄의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는 법익침해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의미한다.

형식적 의미로 범죄를 파악할 경우 '어떤 행위가 어떠한 법률상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데 이에 관한 일반론이 형법총론이다.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파악할 경우 어떤 행위가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의 개념을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국가의 형사 정책적 기준점을 제시하게 한다.

범죄통계(犯罪統計)는 범죄의 통계를 일정한 형식과 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과학적인 검토를 행하고 범죄헌장을 분석·연구한 범죄 대책 상의 자료를 말한다.1) 범죄 통계에서 집계하는 범죄는 경찰관서에 신고된 사건(발생통계원표), 검거된 사건(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을 토대로 한 것으로 법률상 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범죄이다.

예를 들어 뉴스나 정부의 통계자료에서 언급되는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보고된 형법범죄 건수로, 절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와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죄통계는 국가가 주도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국가공식 범죄통계 (official crime statistics)라고 한다. 국가공식 범죄통계(이하 공식 범죄통계)는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즉 범죄현상 자체에 대한 통계와 범죄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응활동, 즉 수사, 기소, 판결, 행형 등에 대한 통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Mosher et al., 2002).

각 나라별로 수집 및 발표 주체, 통계내용 등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공식범죄통계라고 할

마약 사회적손실 年 1700억...숨겨진범죄 감안땐 5조 육박 - munh...

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2901070921335001

2019. 7. 29. - ... 마약피해지수(Drug Harm Index) 개발(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에 ... 해당 논문은 스헣사사법 비용(법원·검찰·경찰·교정 등 마약류 범죄 비용) ... 까지 고려할 경우, 마약 범죄에 따른 사회적 손실 전체 비용은 약 4조8700억

마약 피해지수 개발 필요성 대두 - 메디코파마뉴스

www.emedico.co.kr > 뉴스 > 학술·학회

2016. 11. 29. -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비용 또는 피해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무엇 ... 박성수 교수는 "국내에서 마약과 조직범죄 수사는 대표적인 특진 등의 ...

한국마약피해지수 산정을 위한 사회적손실비용의 중요도에 관한 ...

www.earticle.net/Article/A333036 •

박성수 저술

본 연구에서는 한국마약지수(KDHI)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서 사회적손실비용을 ... 박성수 [Park, Seongsu |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저자: 백민석 [Baik, ...

전체기사 < 뉴스 | 약사공론♥

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79091 •

2016. 11. 28. - 이날 행사에서는 제4회 한국마약퇴지학술대상 시상식도 진행됐으며, 삼육약대 정 재훈 교수와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성수 교수가 학술대상을 ...

[PDF]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비용 분석*®

https://m.police.ac.kr/pds/1546221720016.pdf *

주제어: 마약, 유해약물, 사회적 비용, 인적자원접근법, 비용추계, 암수율. * 이 논문은 2016년 ... 에서 도출된 연구결과 임. **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성수.박영주,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형사사법비용에 관한 연구", 矯正研. 究, 49, 2010.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직원 구속…논란 이후 첫 구속

등록 :2019-02-18 08:48

6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가 지난달 28일 보도한 버닝썬 직임들의 목행 강면을 담은 시시티비(CCTV) 장면, 문화방 송 뉴스메스크 감무리

신병확보한 경찰, 마약 유통경로 규명에 집중…중국인 여성 추가 소환 방침

ECONOMICS OF CRIME

Crime and punishment

Group member Khanh Ha Bui Tarun Patel

(그림) 범죄 발생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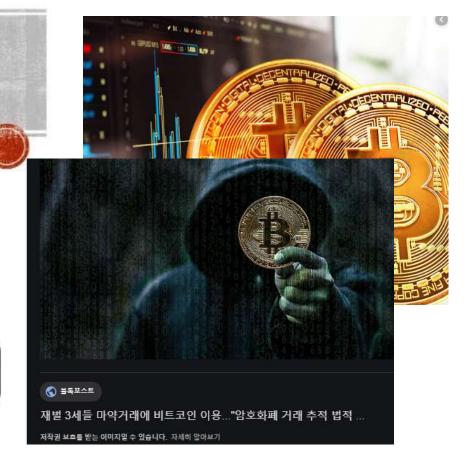
범죄 기대이익

- 금전적 이익
- 심리적 보상

범죄 기대비용

- -체포가능성
- 형벌의 크기
- 범죄 계획비용





M-Robo

Thank You!